

#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제정) 운용계획 변경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743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2020년 대외협력기금(국내제정)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'재무활동' 금액이 당초보다 20% 초과 변경되었음.

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제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당초 3,073백만원에서 3,700백만원으로 627백만원 증가하였음.

나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「재무활동」 금액이 당초 3,136백만원에서 3,763백만원으로 627백만원 증가하여 20% 초과 변경되었고,

다. 이후 코로나 19로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원을 위한 「농촌일손교류 프로젝트」 신규 추진,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「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」 사업비 증액 등으로 조정하여 최종 「재무활동」 금액은 3,204백만원임.

- 농촌일손교류 프로젝트 101백만원 신규편성
-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 500백만원 증액(1,000백만원 → 1,500백만원)
-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42백만원 감액(300백만원 → 258백만원)

## 라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### <수입계획>

| 구 분            | 당초계획<br>(A) | 1차~3차<br>(B) | 4차변경<br>(C) | 5차변경<br>(D) | 6차변경<br>(E) | 증 감<br>(E-A)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수입 합계          | 6,331       | 6,331        | 6,958       | 6,958       | 6,958       | 627          |
| 일반 회계<br>전 입 금 | 3,200       | 3,200        | 3,200       | 3,200       | 3,200       | -            |
| 이자 수입          | 58          | 58           | 58          | 58          | 58          | -            |
| 예 회<br>치 금 수   | 3,073       | 3,073        | 3,700       | 3,700       | 3,700       | 627          |

### <지출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          | 당초계획<br>(A) | 1차~3차<br>(B) | 4차변경<br>(C) | 5차변경<br>(D) | 6차변경<br>(E) | 증 감<br>(E-A)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지출합계          | 6,331       | 6,331        | 6,958       | 6,958       | 6,958       | 627          |
| 비용자성<br>사 업 비 | 3,192       | 3,192        | 3,192       | 3,251       | 3,751       | 559          |
| 기본경비          | 3           | 3            | 3           | 3           | 3           | -            |
| 재무활동          | 3,136       | 3,136        | 3,763       | 3,704       | 3,204       | 68           |

※ 1차~3차 변경 : 예산과목만 변경(자치단체간부담금→민간경상보조금)하여 예산액 변경 사항 없음

※ 5차 변경 : '농촌 일손 교류 프로젝트' 시범사업 59백만원 신규 편성

※ 6차 변경(예정) :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 관련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비 500백만원 증액, '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' △42백만원, '농촌 일손교류 프로젝트' +42백만원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#### 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협력상생담당관 대외협력팀 김현태(☎ 2133-6655)